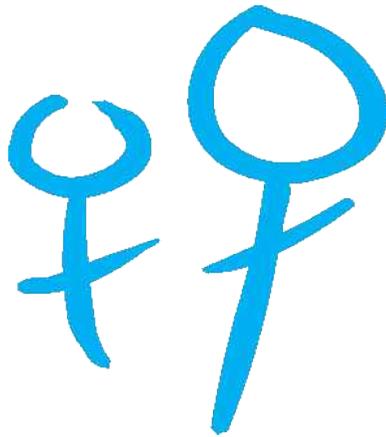


함께하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2021 정기회원총회



- ◆ 때: 2021년 1월 27일(수) 오후 7:00
- ◆ 곳: 함께하는거창 사무실



참여와 자치의 지역공동체
함께하는거창

50128

경남 거창군 거창읍 공수들 6길 8-8, 1F

전화 055-942-1117

팩스 055-943-1170

전자우편 cham1117@hanmail.net

누리집 <http://gcngo.org>

코로나 사태로 집회가 어려우니 각 안전에 대해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총 회 순 서

1. 개회선언
2. 공동대표 인사말
3. 감사보고
4. 2020년 결산보고
5. 2020년 사업보고
6. 2021년 사업계획(안) 보고, 의결
7. 2021년 예산(안) 보고, 의결
8. 임원개선의 건
9. 기타안건 토의
10. 폐회선언

※ 올해 총회는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합니다.

※ 코로나 19로 2021년 정기회원총회의 집회가 불가능하여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에 위임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4~9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문자 : 010-9661-8786이나 Email:cham1117@hanmail.net으로 1월 26일까지 보내주시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공동대표 인사말

2021년 정기총회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라는 엄청난 재난 속에서도 **함께하는 거창**이 균정을 감시하면서 ‘참여와 자치의 공동체’를 이루려는 노력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회원님들의 관심과 정성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0년 초 사무국장이 균의원으로 가고, 상임대표가 갑자기 사임하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맙게도 하반기부터 이종성 회원님께서 사무국장으로 일해주셔서 나름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의 사업은 이리하였습니다. 크게, 거창군의 소위 ‘거창교도소 민관협의회’ 구성과 ‘거창교도소 백서’문제에 대한 대응, 박수자 균의원 주민투표 부정행위 유죄판결 대응, 거창군의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사건 대응, 소위 ‘거창교육복합센터’ 건립 계획에 대한 대응 등이었습니다. 때로 바로잡고, 때로 경종을 울리고, 때로 갑갑하기도 했습니다만, 바람직한 지역자치는 아직 길이 멀어 보입니다.

2021년에는 새로운 기획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사회는 ‘촛불혁명’을 계기로, 거창사회는 ‘주민투표’를 계기로 적잖게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우리의 사업도 ‘비판’과 ‘대안’의 균형을 잡아가고자 합니다. 기반은 마련되었습니다. 2년 전에 **함께하는 거창** 부속 연구소를 설립했으며, 2020년에는 ‘도서출판 **함께**’라는 출판사와, **함께하는 거창 TV**를 설립했습니다. 연구소, 출판사, TV 방송을 통해 여러 방면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사업이 가능하리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반가운 얼굴을 직접 뵙기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총회를 여는 방법을 깊이 검토한 결과, 회

원님들의 고견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의견을 보내주시면 총회 날 운영위원회를 열어 총회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롭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아무쪼록 올해에는 전염병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회원님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021.1.15.

상임대표 신용균

감 사 보 고

2021년도 **함께하는 거창**의 재정과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총회에 보고 드립니다.

1. 재정감사

-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하는 거창을 잘 운영해주신 대표님과 사무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안정적인 재정은 시민단체가 여러 활동을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현실적으로 회원 확장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표나 운영위원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 사업감사

-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라는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질병으로 인해, 여러 사업이 아예 진행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거창군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적하고 반박하며 활동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회원님들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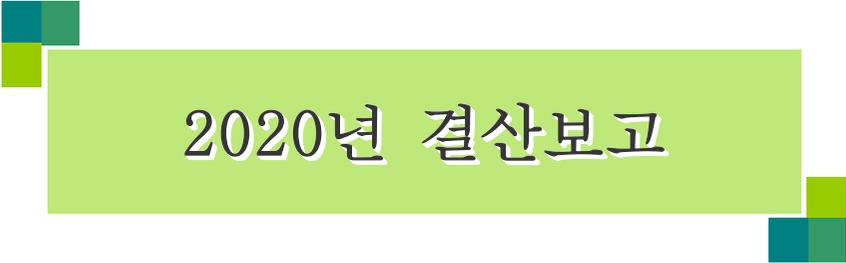
2021년 1월 15일

감사 조 영 준

2020 회의록

2020 정기 회원총회 회의록

1. 개회선언
2. 공동대표 인사말
3. 감사보고
4. 2020년 결산보고
5. 2020년 사업보고
6. 임원선출
 - 1) 이기식 상임대표 사임.
 - 2) 권순모 사무국장 이임.
 - 3) 신용균 공동대표 선출.
 - 4) 조영준 감사 선출.



2020년 결산보고

● 회계연도:2020년 1월 1일~12월 31일(단위:원)

1.자 본 현 황

자 산		부채와 자본	
보통예금	11,441,476	차입금(-통장)	0
적금(퇴직적립금)	600,000	퇴직적립금	600,000
임차보증금	20,000,000	자 본 금	31,441,476
합 계	32,041,476	합 계	32,041,476

2.2020년 회계별 수입·지출 현황

수 입		지 출		잔 액	
일반회계 (사무국)	23,544,583	일반회계 (사무국)	17,461,610	일반회계 (사무국)	12,041,476
				작권모	3,202,282
합 계	23,544,583	합 계	17,461,610	합 계	15,243,758

4.일반회계(사무국) - 전년도 대비 수입

수 입 (2019년도)			수 입 (2020년도)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회비수입	전년도 이월금	6,664,849	회비수입	전년도 이월금	416,472
	회비수입	24,340,000		회비수입	22,340,000
	후원금(사무국)	4,469,920		후원금(사무국)	0
	후원금(연구소)	0		후원금(연구소)	0
	후원금(작권모)	450,000		후원금(작권모)	0
기타수입	이자수익	5,375	기타수입	이자수익	4,583
	차입금	0		차입금	0
	잡수입	1,676,000		잡수입	1,200,000
	임차보증금	0		부대비용	0
수입합계		37,606,144	수입합계		23,961,055

5.일반회계(사무국) - 전년도 대비 지출

지 출 (2019년도)			지 출 (2020년도)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인 건 비	급 여	20,250,000	인 건 비	급 여	5,000,000
	상여금	0		상여금	0
	퇴직적립금 (김하주퇴직금)	3,385,660		퇴직적립금	600,000
	복리후생비	1,716,470		복리후생비	99,420
사무유지비	건물관리비	3,600,000	사무유지비	건물관리비	3,600,000
	기기구입비	1,000,500		기기구입비	847,170
	사무용품비	206,500		사무용품비	74,780
	세금과 공과금	650		세금과 공과금	5,360
	소모품비			소모품비	
	수선비			수선비	
	수도광열비	853,100		수도광열비	783,340
통신비	330,673	통신비	325,130		
사 업 비	도서인쇄비	891,790	사 업 비	도서인쇄비	
	발 송 비	61,360		발 송 비	36,460
	분 담 금	450,000		분 담 금	100,000
	사 업 비	1,056,070		사 업 비	900,000
	회원활동비 (경조금)			회원활동비 (경조금)	
	회 의 비	437,220		회 의 비	139,950
	출장연수비			출장연수비	
사업외비용	잡 비		사업외비용	잡 비	
	예비비			예비비	
	현 금	3,366,151		현 금	
지출합계		37,606,144	지출합계		12,511,610

6. 계정과목 설명

구분	계정과목	내 용
수 입	회비수입	회원 회비 수입
	후원금(사)	사무국 정기, 부정기 후원금
	후원금(연)	교육연구소 후원금
	사업수익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
	이자수익	예금통장 이자 수익
	차 입 금	-통장에서 빌려온 돈(부채)
	잡 수 익	수입항목이 없는 수입
	전년도 이월금	지난해 장부에서 넘어 온 현금
지 출	급 여	상근 실무자 급여, 활동비
	상 여 금	상근 실무자 상여금
	퇴직적립금	상근 실무자 퇴직 적립금
	복리후생비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
	건물관리비	사무실 월세
	기기구입비	각종 기자재 구입비
	사무용품비	사무용품 구입비
	세금과 공과금	정부, 자치단체에 납부한 세금
	소모품비	쓰레기봉투, 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 구입비
	수 선 비	자산 유지, 보수 비용
	수도광열비	상하수도세, 전기세, 냉난방 비용(기름 등)
	통 신 비	전화, 인터넷, 문자메세지 발송 비용
	도서인쇄비	소식지 등 인쇄비, 복사비, 도서 구입비
	발 송 비	소식지 등 각종 우편물 발송비, 택배비
	분 담 금	다른 단체와 연대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사 업 비	각종 사업비용
	회원활동비	회원 송년회 등 회원활동을 위한 비용
	회 의 비	회원총회, 각종 회의 개최 경비
	출장연수비	교육, 출장에 필요한 비용
	잡 비	기타 계정과목이 명확하지 않은 지출
	차입금 상환	-통장 상환 금액
	예 비 비	예비비
	현 금	현금

● 자산변동 현황(2020년 12월 31일 현재)

자 산				부 채 와 자 본			
구 분	2019년	2020년	증감	구 분	2019년	2020년	증감
보통예금	3,366,151 (13.1%)	11,441,476	8,075,325	차입금	0	0	0
적금(퇴직적립금)	2,200,000 (8.6%)	600,000	-1,600,000	퇴직적립금	2,200,000 (8.6%)	600,000	-1,600,000
임대차보증금	20,000,000 (78.2%)	20,000,000	0	자 본 금	23,366,151 (91.3%)	31,441,476	8,075,325
합 계	25,566,151 (100%)	32,041,476	6,475,325	합 계	25,566,151 (100%)	32,041,476	6,475,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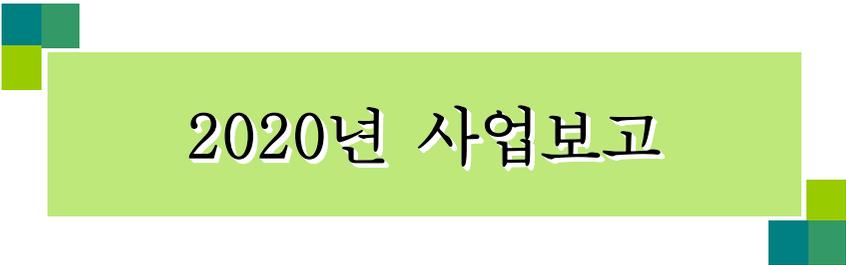
·보통예금: 매년 12월 31일 기준 통장잔액.

·적금(퇴직적립금): 현 실무자 퇴직연금보험 60만원 적립.

·임대차보증금: 현재 사무실 보증금 20,000,000원.

차입금: 없음.

·자본금: 2019년에 비해 6,475,325원 증가.



2020년 사업보고

1. 거창교도소 관련 사건

- 2.20 거창군이 민관협의회 참가 요청. 거창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총화하여 결정하기로 함.
- 4.23 거창 시민사회단체 모임(광안리 식당)에서 참가자 다수가 불참을 희망하였으므로 **함께하는 거창**이 이 협의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함.

◎ 거창구치소 갈등 해소 백서 발간

- 7월 13일, 거창구치소 갈등 해소 백서편찬위원회 조직(거창군 미래전략과)
- 의장 : 권순모 의원, 김홍섭, 백종숙(이상 반대 측), 윤병태, 최민식(이상 찬성 측), 임영수, 김성윤, 이지은(이상 공무원)
- 올해 중으로 온라인 교도소 백서 편찬 계획
- 7월 17일, 상임대표가 권순모 의원에게 전화, 최정환 의원(민관협의회 의장)을 방문 면담하여, 자료수집만 하고 백서를 편찬하지 않기로 약속함.
- 상임대표, 백종숙 위원과 논의, 한들신문 칼럼 기고.
- 백서발행위원회 규약에서, “발행하지 않는다”고 수정하지 않을 경우 대응 필요하다고 판단.
- 8.24 백서편찬 반대 성명서 발표.
- 편찬위원회 해산.

2020년 7월 13일 거창군은 거창구치소 갈등 해소 백서편찬위원회를 조직(의장 권순모, 김홍섭, 백종숙(이상 반대 측), 윤병태, 최민식(이상 찬성 측), 임영수, 김성윤, 이지은(이상 공무원))하고 빠른 시일내에 교도소 백서 편찬을 계획하였으나 함께하는 거창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성명서 발표와 공문발송 등 반대로 편찬위원회는 해산됨.

2.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논란

◎ 거창군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1심서 패소

2020년 11월 13일 서울중앙법원 제22민사부는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에 대해 거창군이 집행위에 17억 3,55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이 금액은 법원이 거창군과 집행위에 내린 강제조정금액(14억 8473만 원)이나 화해 권고 결정 금액(11억 261만 원) 보다 많음.

재판부는 집행위가 30년간 연극제를 개최해 역사와 전통을 이룬 기여와 상표권 이전에 따른 계약서를 토대로 판결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힘.

거창군은 항소를 하더라도 집행정지 신청을 위한 공탁금 수억 원을 지출해야 하므로 거창군의회 동의가 필요함.

17일 구인모 거창군수가 직접 거창군의회에 상황을 보고.

지난 5월, 집행위의 ‘8억+임기 보장’ 제안과 법원의 두 차례 권고를 거절해 난감한 입장.

◎ 거창군 부군수와 만남

12월 1일 미락식당에서 YMCA(김홍섭), 함께하는거창(이종성, 신승열), 농민회(김상택), 민예총(한대수), 전교조(송성동), 군청(부군수의 3명) 참석하여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관련 대화 나눔.

항소 기간 : 12월 7일까지

거창군 : 집행위원회와 협상을 하고 있지만, 집행위원회 쪽에서 11억 이하는 불가방침

신승열 : 거창군과 집행위원회 간의 협상에 제3자를 투입하여 해결하라.

이종성 : 계약 자체가 잘못되었으니 군수가 사과하고 군민 의견 수렴하라. 재판과정을 공개하라. (‘거창몰’을 거창군에 넘긴 예)

한대수 :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을 버리고 다른 이름을 사용하자.

거창군 : 현재로서는 상표권을 매입하지 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김상택 : 협상을 하면서 항소를 준비하라.

◎ 거창군과 군의회 동향

거창군수의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 관련 대군민 담화문 발표’(12월 7일)

12월 4일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와 10억 원에 합의.

◎ 거창군의회, 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 제동

총무위서 상표권 가액 10억 전액 삭감, 11일 본회의서 수정동의안 발의 주목

거창군의회는 8일 열린 제253회 정례회 1차 총무위원회(권재경, 권순모, 김향란, 박수자, 최정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추정 수정 예산안 중 상표권 가액 10억원과 변호사 선임비 5천 500만원을 전액 삭감.

권순모 의원과 통화(12월 9일) : 11일 본회의서도 수정동의안 통과되지 않을 것. 거창 YMCA 김향란 군의원 고발(12.10)

◎ 군의회 합의금 부결(2020년 12월 11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창군과 집행위원회의 합의금 10억 원에 대해 부결)이 가결되었음.

따라서 거창군은 4자협의체를 구성하여 2021년 1월 30일까지 거창연극제집행위와 재협상 시도.

매입을 성사시키겠다는 군의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으로, 매입금액에서의 합리성을 따져보아야 하겠으나 ‘상표권 매입’이라는 갈등 해결의 수단에 대한 적절성 여부와 부당한 계약의 책임을 물어 **합의금** **계약**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군수로부터 답변서를 요청하여 답변서를 받았으나 진정성 있는 책임은 없고 변명으로 일관하였기에 경상남도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한 상태.

합의금은 차치하고 부당한 계약에 따른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거창국제연극제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철저한 분석과 감시가 필요함.

3. 거창복합교육센터 건립사업

◎ 2020년 9월 조사내용

- 거창군청 인구교육과에 문의한 결과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는 나왔지만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니라고 함. 현재 용역결과는 미흡하고 앞으로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함.(현재까지 400명 정도 설문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임)
- 거창군의 강행 의지는 확실하게 있어 보임.
- 권순모 의원에게 문의한 결과 용역결과는 타당성이 있다는 취지로 나왔으나 의회에서 예산 올리는 것 자체를 거부하여 막았기 때문에 사업계획 자체가 없을 것이라고 함.
- 지난달 28일 거창군의회 주례회에서 거창군은 거창지원과 거창지청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복합교육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예산은 893억 원으로, 이 중 군비는 805억 원이 든다고 한다.
- 중간 용역 결과 매년 15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예산확보 계획 또한 불분명한 상태이다. 그뿐이 아니다. “거창지원·지청 이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추진하고 있어서 군의원이 반발하고 주민들의 걱정이 크다.
- 과거를 되돌아보면 주민들의 공감대 없이 추진한 사업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들이 많다. 따라서 거창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8월 중으로 결과 보고 및 주민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라 하는데 지켜볼 일이다.

◎ 거창 유사 기관 조사

1. 거창청소년수련관(2,939.96㎡)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
한울터 체육활동, 프로그램	어울림터(인터넷 부스) 인터넷 정보검색	한배움터 1,2,3 문화강좌실	참배움터/ 세미나실 희망터 / 소회의실 한마당터/강의,워크 샵 등
춤사위터 댄스연습, 프로그램	어울림터(노래방 부스) 노래연습실	정다움터 1,2 동아리운영, 토론 등	소리배움터 / 밴드 동아리 연습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진로체험실
샤워실 샤워, 탈의실	어울림터 (e-sports) 닌텐도 wii 스포츠	방과후아카데미 소나무터, 꿈나무터	상담실 /상담프로그램실

기간 : 2020. 1. 1. ~ 8. 31.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 511,167천 원.

대관료 수입 : 없음.

2. 거창청소년문화의집(약1,000㎡(지도상))			
1층	2층	3층	4층
글벗나래도서관 사용용도 : 작은 도서관	다목적홀 사용용도 : 교육실 비고 : 청소년/일반인	동아리방 1 사용용도 : 동아리 회의	밴드연습실 사용용도: 밴드 동아리 연습
인터넷부스 & 보드카페 사용용도 : 컴퓨터, 인터넷 사용 수용인원 : 컴퓨터 - 14명, 보드카페 - 12명 비고 : 기본 30분 (고등학생 -	공연연습실 사용용도 댄스연습실 비고 : 청소년 대관 멀티미디어실1	동아리방 2 사용용도 : 동아리 회의 세미나실 사용용도 : 교육실 비고 : 청소년 대관 가능	탁구장 사용용도 : 탁구 비고 : 기본 30분

컴퓨터 기본 60 분)	사용용도 : 노래 방, 닌텐도 Wii, DVD	프로그램실 1 사용용도 : 프로그 램실 비고 : 청소년 대관 가능	
야외 농구장	멀티미디어실2 사용용도 : 노래 방, 닌텐도 Wii, DVD	프로그램실 2 사용용도 : 프로그 램실 비고 : 청소년 대관 가능	
	멀티미디어실3 사용용도 : 노래 방, 닌텐도 Wii, DVD		
	북카페&휴게실 사용용도 : 북카 페, 휴식공간		

기 간 : 2020. 1. 1. ~ 8. 31.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 227,954천 원.

대관료 수입 : 없음.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모두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하고 있으나 부족함 없이 운영됨.

◎ 전국 유사 기관 조사

- 서천사랑시민모임 김용빈 대표와 대화 결과 교육발전에 대한 효과 없음.
- 반대 운동을 통해 광장을 만들.
- 광장은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음.

◎ 거창군 인구교육과 공무원 설명

2024년 12월 부지결정 예정.

거창도서관 36년 사용했으므로

거창교육청에서 지혜의 바다 도서관((마산, 김해, 통영)) 운영 예정 지혜의 바다 시설.

-도서관, 진로직업체험센터, 청년일자리, 동아리(현재 거창군 39개 성인 동아리 공간 부족) + 연극고등학교 공연장으로 사용하기엔 공연장이 너무 적다.

-거창교육청이 운영할 지혜의 바다가 새 건물의 50% 충당(70억이라 말하기도 함)

인구증가 폐교 탈출 프로젝트 가북초, 신원초.

서울에서 설명회 개최 주민위원장, 학교장, 면장으로 구성.

빈집 임대(5~10만) 1가구당 2천만 원으로 리모델링 7년 + 일자리 소개(농업, 승강기산업단지, 공공근로), 6가구 리모델링 중 거창대 학생지원.

이상,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교육진흥담당주사 표정애외 1명이 ‘함께하는 거창’을 방문하여 ‘함께하는 거창’이 요청한 ‘거창군복합교육센터’에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함께하는 거창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창군복합교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필요함을 전달하며 거부함. 이에 따라 거창군은 ‘함께하는 거창’이 신청한 ‘거창군복합교육센터’에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 결정을 통지해 왔음.

대화 결과 거창군은 ‘거창군복합교육센터’ 건립 사업을 계속 진행할 의지가 분명함.

거창군은 거창지원과 거창지청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복합교육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용역 결과 전체 예산은 893억 원이며 매년 15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함께하는 거창은 다양한 방면의 검토를 거쳐 거창복합교육센터의 시설은 거창문화센터, 거창한마음도서관, 거창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등과 그 기능이 중복되며 거창군이 주장하는 거창교육발전에도 효과가 미미하고 인구 증가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거창

군수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4. 박수자 의원 주민투표법 위반

박수자 의원은 2019년 10월 16일 ‘거창교도소 위치를 결정하는 주민 투표’에서 ‘실어나르기’를 지시하는 문자를 보내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2020년 6월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음.

함께하는 거창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문을 발송하여 박수자 의원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음.

5. 표주숙 군의원의 땅 앞 다리 건설

표주숙 거창군의원은 하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의 땅 앞에 다리를 건설했다고 KBS에 보도되었음. 이에 **함께하는 거창**은 거창군수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 구인모 군수의 답변을 요구함.

6. 6.15공동선언 20주년 거창촛불문화제

- 615공동선언 20주년,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원 촛불문화제
- 장소 : 군청 앞 민주광장,
- 시간 : 8/12(수) 늦은 7시,
- 분담금 5만원 지급.

7. 이종성 사무국장 취임

권순모 사무국장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기초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퇴직하여 사무국이 공백이었으나, 7월 1일부터 이종성 회원이 사무국장에 취임하여 활동이 정상화됨.

[자료]

성명서

“거창구치소 갈등 해소 백서” 편찬에 대한 거창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우리는 지금 거창교도소 백서를 편찬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거창군은 지난 7월, 교도소 반대 측 인사 3명, 찬성 측 인사 2명, 공무원 3명으로 소위 “거창구치소 갈등 해소 백서편찬위원회”(위원장 권순모 군의원)를 조직하고, 올해 중으로 300쪽 내외의 백서를 편찬하기로 계획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바, 우리는 이 백서가 객관성을 담보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백서편찬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편찬 시기가 적절치 않다. 백서는 일이 매듭된 후 편찬하는 것이 상례이다. 거창교도소는 아직 일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이제 토목공사를 시작한 지금 백서를 편찬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시기상조이다.

둘째, 편찬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백서 편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7~8월에 자료를 수집하고, 9~10월에 집필하여, 11월에 인쇄 및 배부한다고 계획되어 있다. 지난 7년에 걸친 사건에 대해 두 달 만에 자료를 제대로 모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교도소 반대 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대부분 백서편찬에 반대하고 있으며, 당연히 자료수집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해 보면, 이번 백서는 거창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짜깁기하는 수준에 불과할 것이니, 제대로 된 백서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

셋째, 이번 백서는 거창군수의 치적 자랑이 될 가능성이 크다. 편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백서의 내용은 “거창구치소 유치 배경과 과정, 갈

등의 시작과 다양한 갈등 해결 시도, 주민투표를 통한 해결”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으로 백서를 편찬한다면, 거기에 어떤 자료가 들어가든, 결국은 현 거창군수가 지역의 갈등을 해소했다는 치적 자랑일 뿐이다. 이래서는 백서의 생명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현재 거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위 “거창구치소 갈등 해소 백서” 편찬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장차 백서를 편찬하려면, 객관적인 검증 능력을 갖춘 학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 편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아직 거창교도소를 둘러싼 갈등에서 양금이 채 가시지도 않는 현재 백서를 편찬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현재의 작업은 군 재정 낭비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거창구치소 갈등 해소 백서 편찬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8월 24일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여성회, 사람사는세상거창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거창지회, 푸른산내들, 함께하는거창

보도자료

거창시민사회단체, 거창군수의 교도소백서 편찬 중단 요구!

성급한 “거창구치소 갈등 해소 백서”로 지역갈등 재발 우려

거창교도소 백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편찬해야

거창의 시민사회단체가 거창군수가 추진 중인 “거창구치소 갈등 해소 백서” 편찬에 반대하는 입장 발표하였다. 함께하는거창, 거창농민회 등 7개 지역시민사회단체는 지금은 거창교도소 백서를 편찬할 시기가 아니라며, 백서편찬위원회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거창군수와 백서편찬위원장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거창군수(구인모)는 지난 7월 교도소 반대 측 인사 3명, 찬성 측 인사 2명, 공무원 3명으로 “거창구치소 갈등 해소 백서편찬위원회”(위원장 권순모 군의원)를 구성하고, 올해 중으로 300쪽 내외의 백서를 편찬하기로 계획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거창 시민사회단체는 지금 백서를 편찬하는 데 반대하는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우선, 편찬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백서는 일이 매듭된 이후에 편찬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제 교도소 토목공사를 시작한 지금 백서를 편찬하는 것을 누가 보아도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나아가 편찬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점도 지적했다. 백서편찬위원회는 올해 7~8월에 자료를 수집하고, 9~10월에 집필하며, 11월에 인쇄, 배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창교도소 반대 운동에 앞장섰던 인사들은 대체로 백서편찬과 자료수집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제 이번 백서는 거창군이 가지고 있는 자료의 짜깁기에 불과해, 제대로 된 백서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백서는 객관적인 백서의 편찬이 아니라 거창군수의 업적 자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미 백서의 차례를 “거창구치소 유치 배경, 갈등의 시작과 갈등 해소 시도, 주민투표를 통한 해결”로 정해 놓아서, 이 백서에 어떤 자료가 들어가든 결국 현 거창군수 구인모가 자

신이 지역갈등을 해소했다는 업적을 선전하는 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거창시민사회단체는 백서편찬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 이 백서가 출판되면 또다시 지역민의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리고 장차 백서를 편찬하려면, 객관적인 검증 능력을 갖춘 학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한 후 편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거창은 교도소 유치를 둘러싸고 6년이라는 오랜 시간에 걸쳐 심각한 갈등을 빚었고, 아직 주민들은 상처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다. 이번 거창군수의 백서 출판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다시 술렁이고 있다.

참여 단체 :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여성회, 사람사는세상거창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거창지회, 푸른산내들, 함께하는거창

성명서

**유죄판결 받은 박수자 거창군의원은
위법행위에 대해 군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박수자 의원은 2019년 10월 16일 ‘거창교도소 위치를 결정하는 주민투표’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2020년 6월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거창의 시민단체는 지난해 10월부터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군민에게 사과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법과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의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잊히고 묻혀 버릴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술선수범해서 법을 준수해야 할 군의원이, 앞장서서 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망가뜨렸으면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무릎 꿇어 사과해야 마땅하다.

그가 지난 범법행위를 잊어버렸다면 다시 상기시켜 주겠다. 그는 투표 당일인 10월 16일, 거창군 마을 이장들에게 ‘실어나르기’를 지시하는 문자를 보냈다. 이는 주민투표법 제21조의 ‘주민투표 당일에는 투표 운동을 금지한다.’는 조항에 명확하게 위배 된다. 그가 마을 이장들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장님 주민투표 관련 수고 많으십니다.
거창구치소 결정의 날이 오늘입니다.
그동안 고생이 헛되지 않길 바랍니다.
노인분들 이동 시 구치소 이전 측에서 계속 감시하고 있으니 조심하시고
출발은 경로당에서 하지 말고 제3의 장소에서 출발하고
투표장소 이전에 하차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하도록 지혜를 발휘해 주시고

현재 장소 추진 찬성이 압도적인 지지로 거창발전 앞당김시다.”

- 서부경남신문, 2019.10.16. 15:18

그는 심지어 ‘교도소 반대 측에서 감시하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까지 말했으니, 악질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런데도 그는 “투표 전날 초저녁잠을 자고 나서 시간을 착각해 일어난 실수로 새벽인 줄 몰랐다.” “실수로 문자가 전송됐다.”라고 변명했다. (경남도민일보, 2019.10.17.)

보라, 스스로 “공정한 주민투표 동참”을 표명했던 자가(2019. 9. 23. 제 241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남신문, 2019. 9. 23.) 스스로를 속이고, 군민을 무지몽매하게 만드는 우를 저지르는 현장을! 입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 행동은 온갖 불법과 악행을 저지르는 자가 어찌 바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이제 법원이 자신의 범법 사실을 인정한 이상, 자신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더욱이 거창에서 실시된 주민투표는 한국에서 거의 실시된 적이 없는 수준 높은 직접민주정치제도이다. 거기에 재를 뿌려 민의를 왜곡시킨 일이 군의원이 할 일인가? 법원에서 위법이라고 판결한 마당에 무슨 변명을 할 생각인가? 스스로는 망각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잊지 않았다.

군의원은 공인이다. 공인은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이 있다. 형량이 의원직 박탈에 미달했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박수자 의원은 범법행위를 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거창군의회는 벌금형이 선고된 범법자 박수자 의원에 대해 즉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군민의 대표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거창군의회에 도덕적 위상을 떨어뜨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박수자 거창군의회원과 거창군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박수자 군의원은 군민 앞에 무릎 꿇어 사과하고 즉각 의원직 사퇴하라.
2. 거창군의회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박수자 의원을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
3. 우리는 거창군 의원의 품격과 거창군 의회의 공명정대함을 기대한다.

2020년 9월 10일

함께하는거창

보도자료

**‘함께하는거창’, 박수자 군의원 사퇴 강력요구
지역사회와 군의회의 ‘계류’으로 추락된 박수자 군의원
‘주민투표 위법행위 유죄 선고받은 박수자 거창군의회원은 즉각 사퇴하라’**

거창의 시민단체 ‘함께하는거창’은 교도소 주민투표 관련 위법행위로 지난 6월 유죄판결을 받은 박수자 군의원에 대해 사과와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함께하는거창’은 성명서에서 “박수자 의원은 2019년 10월 16일 ‘거창교도소 위치를 결정하는 주민투표’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2020년 6월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군민에게 사과의 말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법과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

이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의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박수자 의원을 강력히 성토했고 나섰다.

박수자 군의원은 지난해 주민투표 당일, ‘주민투표 당일에는 투표운동을 금지한다.’라는 주민투표법을 무시하고, 마을 이장들에게 투표 독려 및 불법선거운동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발되었었다. 검찰의 조사를 받고 이어 법원의 벌금형 판결을 받음으로써 박수자 의원의 범법행위가 확인되었음을 ‘함께하는거창’은 밝혀왔다.

지난해 교도소 이전 관련 주민투표 시, 박수자 의원은 투표 당일 거창군 이장들에게 주민들 실어나르기를 지시하고 현재 장소 추진 찬성에 투표하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혐의뿐만 아니라, 이장들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까지 지역 언론에 기사화되어 군의원의 자질 논란과 함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다.

‘함께하는거창’은 “이제 법원이 자신의 범법 사실을 인정한 이상, 자신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더욱이 거창에서 실시된 주민투표는 한국에서 거의 실시된 적이 없는 수준 높은 직접민주정치 제도이다. 거기에 재를 뿌려 민의를 왜곡시킨 일이 군의원이 할 일인가? 법원에서 위법이라고 판결한 마당에 무슨 변명을 할 생각인가? 스스로는 망각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잊지 않았다.”면서 박수자 의원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해 왔다.

또한 “군의원은 공인이다. 공인은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이 있다. 형량이 의원직 박탈에 미달했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박수자 의원은 범법행위를 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거창군의회는 벌금형이 선고된 범법자 박수자 의원에 대해 즉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군민의 대표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거창군의회에 도덕적 위상을 떨어뜨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라면서 거창군의회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모습을 요구했다.

군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에 의해 기소되면 징계위원회를 열

있던 전례가 있는 군의회로서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수자 군의원은 이래저래 지역사회와 거창군의회의 ‘계류’이 되어가고 있다.

함께하는거창

‘함께하는거창’ 박수자 군의원 답변 요청서

‘함께하는거창’은 성명서를 통해서 박수자 의원이 2019년 10월 16일 ‘거창교도소 위치를 결정하는 주민투표’에서 마을 이장들에게 ‘실어나르기’를 지시하는 문자를 보내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직접민주 정치제도를 초석부터 뒤흔드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러 2020년 6월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박수자 의원 본인은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동시에 군의회가 박수자 의원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수자 의원과 거창군의회는 그 어떤 답변도 없기에 ‘함께하는거창’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요청합니다.

1. ‘함께하는거창’은 박수자 의원과 거창군의회 의장님께서 12월 31일까지 성명서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첨부>

■ 성명서 1부

함께하는거창 [직인]

공개 질의서

거창군 표주숙 군의원의 땅 앞에 허가 절차를 건너뛰고 군비로 건설된 다리에 대한 공개 질의서

구인모 군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1. 거창군은 하천법 위반하면서까지 표주숙 군의원의 땅 앞에 다리를 건설했다고 KBS에 보도되었습니다. 다리를 건설한 후 이 땅은 사실상 4차선 도로와 이어지면서 땅값은 몇 배로 올랐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표주숙 의원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4개월에 걸쳐 축구장 크기와 맞먹는 6,600m²(9필지)를 동생 남편과 함께 4억 원을 주고 구입했고 6달 만에 다리를 건설했습니다.

군수께서는 왜 하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6개월 만에 다리를 건설할 수 있도록 승인하셨습니까? 아울러 군수께서는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2. 땅을 판매한 사람에 의하면 2년 전 표주숙 의원의 남편이 찾아와 ‘거창군 허가를 받아 다리와 도로를 내어 줄 테니 땅의 일부를 팔라.’고 했다고 합니다. 당시 토지거래 계약서를 보면 표의원의 남편 측에서 ‘지방2급하천 교량설치와 신규 도로개설은 행정당국 인허가 절차 사항임을 감안 매수인이 가능토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약조건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천에 다리를 놓으려면 경상남도를 비롯해 여러 군데 관련 기관들과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거창군은 관련 기관과 협의·허가 절차를 건너뛰고 다리를 건설했습니다. 군수님께서 표주숙 의원의 땅 앞에 다리를 건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셨습니까? 모르셨다면 굳이 법 위반은 물론 세금까지 낭비하며 신속히 처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 3. 매도인에 따르면 표의원의 남편이 ‘(아내가) 군의원이기 때문에 여기 다리를 놓으면 도로포장도 거창군에서 해 줍니다. 아 참 그

군의원이라는 소리는 (어디 가서)하지 마세요.’라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거창군 도시건축과 과장 등 거창군청 담당자들은 인허가의 절차를 무시하고 다리를 건설하였는데 경찰·검찰의 판단을 떠나 거창군은 그들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 것입니까?

질의 4. 거창군은 군의원의 땅 앞 하천이 아닌 일반 거창군민의 땅 앞 하천에 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6개월 만에 건설해 준 선례가 있습니까?

2020. 09. 23

- 함께하는 거창 -

성명서

거창군수는 ‘거창군복합교육센터’ 건립 계획을 즉시 중단하라!

‘**함께하는 거창**’은 거창군이 약 1천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거창군복합교육센터 건립사업 계획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진심으로 1천억 원을 투입해 거창을 교육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그에 앞서 거창의 교육 발전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1. 우리는 이미 거창군의회 보고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거창군수의 거창복합교육센터 건립 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더욱이 이 계획은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그 비용이 엄청난 데 비해 그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이 계획과 추진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거창군이 타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려는 사업을 계획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무슨 꿍꿍이속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 거창군수가 군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약 1천억을 투입하는 만큼 규모가 거대하다. 총사업 비용은 893억 원으로 대부분이 군비로 충당된다고 한다. 게다가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이 건물을 유지 운영하는데 매년 15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이런 건물로 지역을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목표가 가능한지 의아하다. 용역보고서에서조차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고 결론짓지 않았는가!

또한, 건축 장소는 현 죽전의 지원 지청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10층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하니, 그 높이가 거창읍 전체를 압도하게 될 것이다. 이 건물을 교육도시 거창의 랜드마크로 삼겠다는 것이나, 마천루 건물 한 채로 거창이 교육도시가 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거창읍의 경관을 망칠 가능성이 더 크다.

3. 우리는 오랫동안 이 계획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거창복합교

육센터 건립은 거창을 교육도시로 만드는 데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소위 거창복합교육센터의 시설은 거창문화센터, 거창한마음도서관, 거창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등과 그 기능이 중복된다. 지금까지 이 시설로도 부족함이 없었다. 거창복합교육센터 건립으로 거창교육의 발전시킨다는 말은 타당성이 없다. 나아가 이 사업으로 인구를 증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말은 허구에 가깝다. 건물 한 채 짓는다고 교육이 발전하는 것도 아니며, 건물 한 채 짓는다고 교육도시가 되는 것도 더더욱 아니다.

4. 따라서 거창군수는 거창복합교육센터 건립 계획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러한 발상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군수는 충분한 검토 없이 만든 ‘신달자 시인 문학관’이나 ‘거창약초유통센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는가, 모르는가. 왜 똑같은 우를 반복하려고 하는가. 게다가 정보도 공개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가? 거창교도소 사건을 벌써 잊었는가?

5. 반면, 거창군이 거창의 교육 발전을 위해 1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자 하는 데 동의한다. 이미 거창은 상당한 교육도시의 기반이 있으며, 여기에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다면, 거창의 교육은 한층 발전할 것이며, 나아가 인구 증가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사례는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다. 가까이에서는 함양군 서하면의 모범이 있고, 멀리는 강원도 화천군의 모범도 있으니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면 거창군만의 독창적인 교육 발전계획을 창출할 수 있다. 거창의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면 멋진 계획이 나오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협의체가 결성되면 ‘함께하는 거창’도 거창의 교육 발전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거창군수는 거창복합교육센터 건립 계획을 중단하라.

하나, 거창군수는 지금까지 추진된 거창복합교육센터 건립 계획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앞으로 밀실 행정을 중단할 것을 약속하라.

하나, 거창군수는 장기적인 거창교육발전을 모색할 협의체로 ‘교육도시 기획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적극 나서라.

2020년 11월 18일

함께하는거창

보도자료

거창군수는 ‘거창군복합교육센터’ 건립 계획을 즉시 중단하라!

1천억 투자, 매년 15억 적자 건물 지으려는 이유는?

**독창적인 교육 발전계획은 간 곳 없고
모양 좋은 건물만 지으려는 거창군**

거창의 시민단체 ‘함께하는거창’은 거창군수가 추진 중인 “거창군복합 교육센터 건립 계획을 즉시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함께하는거창’은 성명서에서 “거창군수의 거창복합교육센터 건립 계획

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더욱이 이 계획은 밑실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그 비용이 엄청난 데 비해 그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계획과 추진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거창군이 타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려는 사업을 계획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무슨 꿑꿑이속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라면서 거창군수를 강력히 성토했고 나섰다.

‘함께하는거창’에 따르면 거창군수가 군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약 1천억을 투입하는 만큼 규모가 거대하다. 총사업 비용은 893억 원으로 대부분이 군비로 충당된다고 한다. 게다가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이 건물을 유지 운영하는 데 매년 15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이런 건물로 지역을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계획이 가능한지 의아하다는 것이 ‘함께하는거창’의 입장이다.

추진 중인 복합교육센터의 공간별 주요 도입시설을 살펴보면 도서관, 공연장, 교육센터, 문화센터, 복합센터 등의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은 거창문화센터, 거창한마음도서관, 거창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거창대학평생교육시설 등과 그 기능이 중복된다는 것이다.

거창군은 이 건물을 교육도시 거창의 랜드마크로 삼겠다고 하고 있으나, ‘함께하는거창’은 “마천루 건물 한 채로 거창이 교육도시가 될 수 있는가? 과연 교육도시가 건물의 크기나 높이로 될 수 있는가?” 라고 되물었다.

‘함께하는거창’은 “거창군수는 이전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신달자 시인 문학관’이나 ‘거창약초유통센터’를 추진하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애물단지로 방치되어 군비가 낭비되고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막대한 비용이 투자될 거창복합교육센터 건립 계획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창군이 복합교육센터 건립을 중단하고, 거창의 교육 발전을 위해 1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자 하는 데 동의하고 여기

에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다면, 거창의 교육은 한층 발전할 것이며, 나아가 인구 증가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한 사례는 가까이에서는 함양군 서하면의 모범이 있고, 멀리는 강원도 화천군의 모범도 있으니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면 거창군만의 독창적인 교육 발전계획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창의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면 더 멋진 계획이 나오리라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협의체가 결성되면 ‘함께하는거창’도 거창의 교육 발전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께하는거창’은 거창군수에게 지금까지 추진된 거창복합교육센터 건립 계획을 중단하고 그동안의 추진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앞으로 밀실 행정을 중단할 것을 약속하고, 장기적인 거창교육발전을 모색할 협의체로 ‘교육도시 기획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2020년 11월 18일

함께하는거창

성명서

거창군수 구인모의 군 재정 낭비를 강력히 비판한다!

거창국제연극제 사태는 군민을 낮부끄럽게 하였다.

무능하고 후안무치한 거창군수는 더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1. 우리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거창국제연극제의 기형적인 운영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다. 그 핵심은 국제연극제에 대한 거창군의 책임 있는 재정 감사였다. 그러나 거창군은 우리의 제안에 아랑곳하지 않더니 결국 연극제를 파행에 이르게 하였다.

2. 우리는 거창군수가 거창국제연극제 측과 상표권 매입 계약을 맺었을 때, 그 부당성을 제기하고, 거창군수가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였다. 수백억 원의 국비, 도비, 군비 등 국가 재정을 투입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이 소수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의 내용도 국제연극제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었다. 그러나 거창군수는 이에 대해 한 마디의 사과도 없었고, 오히려 뻔뻔스러운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3. 계약이 연극제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이상, 협상의 결렬, 연극제 측의 소송 제기, 거창군의 패소는 예상된 결과였다. 지난 11월 25일, 거창군은 소송에서 패소해,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에 17억 3000만여 원과 소송비용의 90%를 지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뜬금없는 상표권 구매라는 발상과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거창군 재정 낭비로 귀결되었다. 거창군수 구인모의 잘못은 명백하다.

4. 우리는 거창군수가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고 있었다. 오늘에야 거창군수는 항소를 포기하고 거창국제연극제 측에 10억 원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는 이 발표문에서 반성하는 기미나 책임지는 자세를 찾아볼 수 없었다. 책임이라고는 기껏 담당 공

무원을 좌천, 전보시켰다는 것이 전부였으며, 정작 책임자인 거창군수는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특히 군 재정 10억여 원의 낭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회피하였다.

5. 거창군수는 행정의 잘못과 군 재정 낭비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사람이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부끄러움을 느끼며, 자신의 과오에 대해 사과하고, 어떻게든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다. 하물며 공직자이랴! 우리는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후안무치한 거창군수 구인모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거창군수는 국제연극제 사태에 대해 군민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

하나, 거창군수는 이 사태로 발생할 모든 거창군의 재정 낭비를 책임져라!

하나,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거창군민의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것이다.

2020년 12월 07일

함께하는거창

‘함께하는거창’ 거창군수 답변 요청서

‘함께하는거창’은 성명서를 통해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과 관련해, 일반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창군수의 밀실 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군 재정 낭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구체적인 책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창군수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기에 ‘함께하는거창’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요청합니다.

1. ‘함께하는 거창’은 거창군수께서 12월 31일까지 성명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첨부>

■ 성명서 1부

함께하는거창 [직인]

거창군수 답변서(팩스 전송)

함께하는 거창 성명서에 대한 답변서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항상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극제 상표권 이전과 관련 군민들에게 많은 우려와 불편함을 끼친 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귀 단체의 성명서 요구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거창군수는 국제연극제 사태에 대해 군민에게 무릎꿇고 사과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는 1989년부터 시작된 30여년의 역사를 가진 거창군의

대표 축제입니다. 하지만, 연극제의 규모가 점점 커져갈수록 예산집행 과정의 불투명. 단체 내분, 감사 등 어두운 이면이 생겨왔습니다.

군수 후보시절부터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연극제 정상화’를 공약으로 선정하였고, 민선 7기 출범 이후 수차례 업무협의 과정 등을 거쳤으나 의견차이로 합의가 결렬되어, 이후 연극제 정상화 마지막 대안으로 2018년 12월에 상표권을 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상표권 이전 계약은 오로지 국제연극제를 정상개최한다는 목적이외에는 어떠한 사항도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연극제 상표권 이전 관련 논란에 대해 '20. 12.7.(월) 대군민 담화문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재정 낭비를 책임져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5월 약정금 청구소송이 제기된 이후 우리군은 감정가 오류에 대한 주장 등 성실히 소송에 임하였습니다만, 지난 11월 ‘거창군은 집행위에 17억 35백여만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나 군민들의 눈높이를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지 못하고 항소를 하였다면 금년 12월에 변호사 선임비, 집행정지에 필요한 공탁금, 이자부담 등 많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었고, 지금 시점이 연극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최선의 실익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귀 단체에서는 연극제 상표권 10억원이라는 이전 금액에 대하여 재정 낭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하여 심분이 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군의 최대 현안 과제를 빨리 종식시키고, 연극제를 개최하지 않아서 생기는 우리군의 추가 손실을 막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연극제 정상개최를 통하여 주변 상가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올해 개교한 연극고 학생들에게는 희망을, 그리고 수십억원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군민여러분들께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치사항으로 당시 행정복지국장이 지난해 4월과 8월에 거창군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2차례 하였습니다. 그리고, ‘19년 7월 하반기 인사발표 보도자료’를 통해 군민들에게 실망과 우려를 안겨드린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당시 담당과장과 담당주사에 대하여 문책코자 좌천성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담당과장은 금년 2월에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이 문제로 아직 승진시키지 않고 있으며, 담당주사는 퇴직을 신청하였으며 금년 12월말에 조기 퇴직합니다.

또한, 지난 12월 7일에 대군민 담화문에서 그 간 상표권 이전 관련 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드렸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상표권 이전에 대비하여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15명 내외의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해 국제연극제가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력을 집중하여, 내년 여름에는 다함께 즐기는 빛나는 연극제를 군민 여러분께 돌려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거창국제연극제의 갈등을 종식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두가 상생의 길로 노력해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하고 깊이 이해해 주시고 귀 단체에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에는 귀 단체에서 우려하는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들의 의견을 더욱 귀담아 듣고 꼼꼼하게 군정을 챙겨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큰 거창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귀 단체의 무궁한 영광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요청

수 신 경상남도 감사관

참 조 감사관

(경유) 민원처리 총괄/문화·환경 등 보조금 분야 감사 계획수립

담당자

제 목 거창군의“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계약”과 “그와 관련된 제
반 사항”에 따른 거창군 행정의 예산 낭비에 대한 경남도의 감사 요청
민원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역시민단체인 ‘함께하는거창’은 관내 시민단체 및 문화예술
단체들과 함께 2018년 12월 24일자로 거창군의 거창국제연극제 매입
계약에 대한 부당함과 그와 관련된 제반 사항의 부실함의 이유를 아래
와 같이 제기합니다.

-아래-

하나.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정신에 입각해 볼
때, 본 계약은 혈세를 들여 민간단체와 맺는 계약임에도 불구
하고, 시민들의 정서와 여론을 우선 파악하고자 하는 일체의
민주적 절차에 입각한 행위가 전혀 없는, 구태 정치의 본보기
입니다.

둘. 혈세로 커 온 축제브랜드를 또다시 혈세로 매입하고자하는 군
행정의 발상에 대해 아직도 공감하지 못하는 여론이 지배적이
며, 공유경제적 가치를 담은 ‘거창’이라는 지역명을 개인이나
일개 단체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도 납득이 안 됩니
다. 국, 도,군 재정을 들여 키워 낸 축제의 이름을 과연 개인이
나 단체가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기고 사고팔아도 되는 것인지
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도 깊은 의문이 듭니다.

- 셋. 거창국제연극제는 1997년 12월부터 행정 및 재정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사용에 대한 감사와 행정지도가 극심히 부실하여, 불과 10여 년만인 2008년도에 총체적 부실' 평가와 함께 보조금 정산 문제를 둘러싸고 지속적인 논란을 일으키며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 대표가 실형(벌금500만원)을 선고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로도 감사는 허술하고 방임되어 결국 오늘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보조금 정산에 대해 확실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 넷.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집행위)와의 매매계약에 있어 거창군은 거창국제연극제를 키워오는데 들어간 준비와 도비 그리고 거창군민들의 참여와 노력에 대한 가치 평가를 완전히 배제하고, 스스로 집행위 측에 상한선도 없는 판매 금액을 정하게 하였으며, 자신들이 산정한 가격과 평균가격을 판매 금액으로 하는 정말 일반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특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어처구니없는 매입 조건을 제시하고도 계약해약시에는 20배를 배상한다는 조항까지 넣어 거창군의 혈세를 낭비할 수 밖에 없도록 조처하였습니다.(첨부 계약서 참조)
- 다섯. '거창국제연극제'상표권 등록일자는 2019년 10월 1일입니다. 그리고 거창군이 사단법인 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계약을 한 날짜는 2018년 12월 24일입니다. 이처럼 거창군은 '거창국제연극제'라는 상표권을 집행위가 취득하기도 전에 매입을 했습니다. 물론 거창군이 계약서에 상표권(등록번호 제 41-0199273호)라고 숫자를 표시했지만 이 상표권은 '거창국제연극제 KIFT'입니다. 다시 말해 계약서에는 거창국제연극제 KIFT'라는 문구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마치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을 매입하는 것처럼 되어있습니다. 이는 사실을 왜곡한 계약입니다.
- 또한 집행위가 뒤늦게 출원한 '거창국제연극제'상표권은 2019

년 05월 07일 출연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거창군은 집행위의 상표권 취득에 이의를 제기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직무태만이며 혈세를 낭비하게 한 공무원의 업무상의 배임입니다.

여섯. 거창군의 무소불위의 권력남용과 집행위의 비양심이 합쳐진 계약은 소송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2020년 11월 13일 ‘거창군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에 대해 17억3558만원을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측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거창군은 소송에 승소를 위하여, 준비를 아끼기 위하여, 준비, 도비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나 거창군민들의 참여에 대한 평가금액을 산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창군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적 대응을 했어야 하지만 그들은 전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일곱. 거창군은 패소 이후 집행위와 10억원으로 조정 합의하였지만 거창군의회는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새롭게 4자협의체(거창군 1명, 군의회1명, 집행위1명, 시민단체1명)를 구성하여 합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 합의금이 얼마이든지 간에 거창군의 독단적이고 비상식적인 특혜성 계약은 명명백백하게 감사 되어야 하고 처벌 되어야 합니다.

여덟. 계약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곳곳에서 업무상의 배임 혐의가 명백하게 들어납니다.

배임은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법해석을 근거로 거창군의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무원 및 최종 결재권자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홉. 이 계약의 진행과정을 보면, 시민 여론을 청취하고 정서를 파악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은 채 행정의 독단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의의에 크게 벗어나는 일입니다.

열. 우리 단체는 지금 경상남도에 감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기관인 거창군 감사실로 이송시키는 일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건은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본 건은 거창군수와 직접적인 사건이고 거창군수와 거창군수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닿고 있는 담당 공무원을 감사하는 것이므로 본 감사가 거창군으로 이송된다면 그것은 우리 단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런 일이 현실이 되어 막대한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3. 이상, 위와 같은 이유로 거창군수 및 담당 공무원이 참여지방자치의 가치를 크게 손상시키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불평등 계약에 대해 성역 없는 감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경상남도 감사관실에 제기 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함께하는거창

회원 소모임 활동

푸 른 숲

우리 지역의 가까운 산과 전국의 명산을 찾아 자연과 호흡하며,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회원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줍니다.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산행대장: 백철우)

■ 6월 정기산행 덕유산 횡경재

1. 날짜:2020년6월20일(토)
2. 참가자:김영수, 윤 철, 이창희, 신승렬, 방창희, 백철우 6명
3. 코스:송계사-->횡경재-->송계사
4. 산행시간:3시간30분

■ 우두산, 의상봉

- 1.날짜:2020년7월19일
- 2.참석자:김영수, 최정애, 방창희, 백철우. 4명
- 3.코스:고건사 주차장-->우두산(상봉)-->의상봉-->고건사-->고건사 주차장
- 4.산행시간:3시간

■ 8월 정기산행

- 1.언제:2020년8월16일
- 2.어디로:비계산(가조)
- 3.출발시간 및 장소: 읍사무소 주차장에서 오전 10시 출발.

■ 10월 정기산행

- 1.일시 : 2020년 10월 18일

2.산행코스 : 운장산

■ 11월 정기산행

- 1.일시 : 2020년 11월 15일
- 2.참가자 : 김영수, 권문상, 전수미 부부, 백철우(5명)
- 3.산행코스 : 백운동 주차장→만물상→서성재→백운동 주차장
- 4.산행시간 : 4시간

작은권리찾기모임

일상생활 곳곳에서 부딪치는 작은 권익 문제를 찾아내고, 지역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낡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현실을 개선하여 우리 스스로 권리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건강한 사회참여의 기쁨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가슴 뿌듯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대표: 변범식, 총무: 최은주)

■ 6월 모임

1. 날짜 : 2020년 6월 23일 화요일 저녁 7시
2. 참석자 : 변범식, 김기오, 최광재, 김도연, 이진웅, 윤철, 정은주, 신용균
3. 장소 : 광안리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2021년 사업 계획

2021년 **함께하는거장**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살펴봅니다.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들은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채워나가겠습니다. **함께하는거장**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무국

- “군정감시 활동, 지역 정책 제안, 조직의 운영, 지역 연대”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기본업무에 충실하며, **함께하는거장**이 해야 할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홍보

-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겠습니다. 내용을 풍부하고 다채롭게 실어 읽고 싶은 소식지, 회원이 기다리는 소식지로 만들겠습니다.
- Ebook 제작 및 동영상 제작을 통해 다 폭넓게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함께하는거장**의 활동 내용을 주민들에게도 잘 전달하도록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SNS,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잘 활용하겠습니다. 특히 **함께하는 거장**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 회원 활동

- 회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등산모임 푸른숲과 작은권리찾기모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회원들의 요구, 취향에 따라 새로운 소모임 혹은 함께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하겠습니다.

■ 후원이사회 활성화

- 재정 확보를 위해 후원이사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부속 연구소

- Ebook 제작은 **함께이는 거창** 회원이 집필하거나, 취지에 맞는 글을 Ebook으로 제작하고, 일반인에게는 교보문고, YES24 등의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 동영상은 제작하여 함께하는거창 유튜브 채널에 등록하겠습니다.
 - 사업방향 : 거창지역 현황분석, 정책대안, 거창의 인물, 거창의 역사, 거창의 지리, 거창의 문화, 거창인의 작품 등, 기타 거창에 관련된 주제.
- ※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함께이는 거창** Positive 정책

-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에 좀 더 중점을 두겠습니다.
- 거창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하겠습니다.
- 투명한 기부문화 플랫폼을 구상하겠습니다.

■ 연대와 협력

- 2020년 10월 16일 거창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출범을 위한 기획단이 구성되었습니다. 거창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연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예산(안)

1. 일반회계(사무국)

(단위: 원)

수 입			지 출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회비수입	회비수입	21,000,000	인 건 비	활 동 비	14,400,000
	후원금(사)	0		상 여 금	400,000
				퇴직적립금	1,200,000
		복리후생비		0	
기타수입	이자수익	5,000	사무유지비	건물관리비	4,200,000
	차 입 금	0		기기구입비	1,000,000
	잡 수 입	1,200,000		사무용품비	300,000
	전년도 이월금	12,041,476		세금과공과금	5,000
		소모품비		100,000	
		수 선 비		100,000	
		수도광열비		1,200,000	
		통 신 비		550,000	
		도서인쇄비		2,000,000	
		발 송 비		500,000	
		분 담 금	1,000,000		
		사 업 비	4,043,855		
		회원활동비	2,000,000		
		회 의 비	100,000		
		출장연수비	0		
		잡 비	300,000		
		사업외비용	차입금 상환	0	
			예 비 비	847,621	
수입합계		34,246,476	지출합계		34,246,476

함께하는거창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모임은 함께하는거창이라 한다.

제2조(목적) 함께하는거창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동력으로 하여, 생활세계에서의 주권확보와 참여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실천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나아가 참여민주주의 사회의 실현과 자치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함께하는거창의 사무소는 거창에 둔다.

제2장 사업

제4조(사업) 함께하는거창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운동-사업을 전개한다.

1. 주민자치 운동 : 참여민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에의 주민참여 활동
2. 자치공동체 회복운동 : 자치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활동
3. 공론영역 형성운동 : 생활세계의 과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리적 공론을 형성하는 활동
4. 자치언론 개혁운동 : 자치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 언론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활동
5. 민주시민 교육운동 : 주민들의 주권의식과 참여의식 재고를 위한 회원 및 주민교육 활동
6. 기타 이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회원가입) 함께하는거창의 목적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제6조(삭제, 2006년 1월 17일)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함께하는거창이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함께하는 거창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3. 함께하는거창 내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8조(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함께하는거창의 정관을 준수할 의무
2. 함께하는거창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상벌) 함께하는거창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다음과 같은 포상과 징계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회원총회에 보고한다.

- 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회의 포상 대상이 된다.
 1. 회원으로서 본 회의 각종 사업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는 자.
 2. 비회원으로서 참여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 ②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견책 또는 경고를 통해 반성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인정되는 자.
 2. 이 모임의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해 본 회에 피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자.
 3. 위항에 해당하는 임원의 경우 그 직의 수행을 중지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제4장 기 구

제1절 회원총회

제10조(지위) 회원총회는 함께하는거창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1조(소집) 정기 회원총회는 연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임시 회원총회는 재적 회원 1/5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권한 및 의결) 회원총회는 함께하는거창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토의, 결정하며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홈페이지 또는 **SNS**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하고, 의결할 내용을 반드시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모든 회원에게 서면 및 **문자로** 통지하여야 한다. 회원총회에서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기 회원총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
2. 임원개선(공동대표, 감사)
3. 예·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4. 기타 중요한 안건

제13조 (출석) 회원은 회원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못할 경우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직접출석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단, 임원선출은 제외한다.

제14조 (임원개선의 절차) 임원의 선출방법은 회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사무국장은 공동대표의 합의로 임명하고 회원총회에서 승인 받는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5조(지위) 운영위원회는 함께하는거창의 일상적 운영 및 사업과 활동에 관련한 사항들을 의결·집행하는 기구이며, 모든 회의는 회원들에게 공개한다.

제16조(구성) 운영위원회와 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각 회원활동기구의 대표와 사무국장 및 후원이사회 회장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확대운영위원회는 제16조의 1항의 구성원과 후원이사, 고문, 자문위원으로 구성

할 수 있다.

3. 운영위원장은 상임공동대표가 겸직하고, 부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17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매 1개월마다 운영위원장이 정기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확대운영위원회는 제16조 2항에 의거 구성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 1/5이상의 요구 또는 운영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아래에는 상임공동대표를 회장으로 하는 상시 회의기구인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을 선임하여 운용할 수 있다. 운용 규정과 방식은 정기운영위원회 재량으로 한다.

제18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권한) 운영위원회 및 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각종 사업 및 활동의 입안과 집행
2. 회원활동 기구의 승인 또는 승인취소
3. 운영위원 위촉, 후원이사, 고문, 자문위원의 추대
4.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내규의 제정과 개정
5. 사무국의 유지,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7. 기타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무의 처리

제20조(사무국) 함께하는거창의 활동을 총괄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약간 명의 간사, 정책, 기획, 홍보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제3절 공동대표, 고문, 자문위원회, 감사, 후원이사회

제21조(공동대표 및 상임공동대표)

1. 공동대표는 함께하는거창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공동대표는 3인 이내 두고,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2. 공동대표 호선에 의해서 1인의 상임공동대표를 선출한다.

제22조(고문) 함께하는거창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문을 하고, 지도를 받기

위하여 지역의 신망 있는 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23조(자문위원회) 함께하는거창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문에 응할 각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추대한다.

제24조(감사) 함께하는거창의 사업 및 재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둔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후원이사회) 함께하는거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후원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고, 후원이사 호선에 의하여 후원이사회 회장을 선출한다.

제4절 회원활동기구

제26조(회원활동기구) 회원은 본 회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회원활동 모임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자발적 회원활동 모임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으로 해서, 공식 회원활동기구로 등록되며,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① 의무

1. 활동상황에 대하여 회원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2. 활동결과에 대한 대외적 발표 및 대응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 권리

1.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인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2. 활동에 필요한 회원지도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3. 필요한 대외적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절 연구소

제27조(명칭 및 소속) 본 연구소는 '함께하는거창 부속연구소'(약칭 함께하는 연구소)라 칭하고 함께하는거창 산하에 둔다.

제28조(목적) 연구소는 거창과 지역의 전반에 걸친 연구를 진작하고 그 결실을 결집하여 지역의 발전은 물론 균형, 행정 등 일선 현장에서의 활동 발전과 내실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되, 본 정관의 '제2조'와 '제4조'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제29조(주요사업) 연구소는 '제27조' 와 '제28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거창 지역에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에 대한 연구
2. 거창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그와 관련된 전문인력 또는 단체의 연대활동
3. 학술세미나, 발표회, 강연회 등의 개최
4. 관련 연구문헌 및 자료 수집
5. 학술지 및 연구자료집 발간
6. 유관 연구소 및 학술단체들과의 공동작업
7. 그 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5장 재정

제30조(회계연도) 함께하는거창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예산 및 결산) 1.운영위원장은 다음해 예산안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2.당해 연도 결산(안)은 회원총회 개최 전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회원총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3.정기총회에서 승인받은 예.결산서 및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및 함께하는거창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2조(수입)

1. 함께하는거창의 수입은 회원회비, 후원금, 특별기금, 기타수익으로 한다.
2. 특별기금은 후원이사회에서 관리하며 그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할 때 후원 이사회의 결의를 따른다.
3. 특별기금의 이자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회비) 회원회비는 내규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34조(정당 활동의 제한) 공동대표와 사무국장 및 운영위원은 선출직공직에 입후보하는 경우, 정당의 주요당직을 맡을 경우 사임하여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라도 자동으로 그 직을 상실한다.

제35조(준용규정)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36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함께하는거창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내용을 지역신문, 인터넷 등에 공고하며,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함께하는거창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2009. 1. 20 개정)

부 칙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1년 2월 23일 정기총회에서 1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4년 7월 16일 임시총회에서 2차 개정(전면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5년 1월 21일 정기총회에서 3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6년 1월 17일 정기총회에서 4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9년 1월 20일 정기총회에서 5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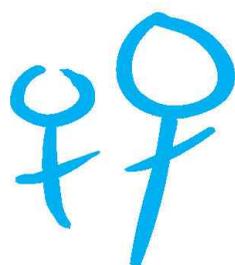
2012년 1월 31일 정기총회에서 6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3년 1월 29일 정기총회에서 7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3년 1월 28일 정기총회에서 8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7년 2월 2일 정기총회에서 9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9년 1월 24일 정기총회에서 10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www.gcnngo.org